

파라다이스로의 최근 입구 등록 거절에 대한 재심 요청에 관하여

미국 저작권청 재심심판소(The Review Board)(이하 “심판소”)는 Steven Thaler(이하 “Thaler”)가 “파라다이스로의 최근 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이하 “저작물”)라는 제목의 2차원 평면 예술 작품의 저작권 등록 거절과 관련한 재심 요청을 판단하였다. 재심 요청에 따라 신청서, 납본 사본 및 관련 서신을 검토한 결과 심판소는 등록 거절을 확인한다.

I. 작품 설명

저작물은 아래와 같은 평면의 2차원 예술 작품이다:



II. 행정 기록

2018년 11월 3일 Thaler는 이 작품에 대한 저작권 청구 등록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작품의 저작자는 “창작 기계(Creativity Machine)”로 기재되었고 Thaler는 “기계의 소유자”라는 말과 함께 청구인으로 기재되었다. 등록신청서에 Thaler는 이 작품이 “기계에 의해서 실행되는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 독자적으로 만들어졌다”고 기재하였고, 컴퓨터로 만든 작품을 창작 기계 소유자의 업무상 저작물로 등록하고자 하였다. 2019년 8월 12일, 저작권청은 저작권 청구 등록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인간에 의한 창작물’이라는 점이 결여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저작권 청구 등록을 거절한다.

Thaler는 곧바로 ‘인간에 의한 창작물’ 요건은 위헌이며 법령이나 판례에 의해서도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저작권청이 저작권 청구 등록 거절을 재심사할 것을 요청하였다.

첫 번째 요청에서 제기된 논점들을 고려하여 작품을 검토한 후, 저작권청은 다시 그 작품이 “저작권 청구 등록을 하는데 필요한 ‘인간에 의한 창작물’이라는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결론지었는데, 이는 Thaler가 그 작품에 인간인 저작자에 의한 충분한 창작적 투입이나 개입의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작권청은 또한 저작물이 인간 작가에 의해 창작된 경우에만 저작권 보호의 법적·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의 저작권법에 대한 오랜 해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다.

연방법 37 C.F.R. § 202.5(c)에 따른 두 번째 요청에서 Thaler는 저작권청의 ‘인간에 의한 창작물’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위헌이며 판례법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자신의 주장을 강조한다. 두 번째 요청에서는 첫 번째 요청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였는데, 기계에 의해 창작된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을 승인한다면 “저작권 보호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포함하여”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목표를 더 넓힐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청은 이를 승인해야한다는 공공 정책적 주장을 크게 발전시킨다. ‘인간에 의한 창작물’ 요건을 다룬 저작권청의 관련 판례 인용에 대해 Thaler는 “[컴퓨터 제작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금지하는 구속력 있는 권한은 없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저작권법은 이미 인간이 주체가 아닌 경우를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저작권청은 “[컴퓨터 제작 저작물]이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현재는 구속력이 없는 과거의 사법적 의견에 의존하고 있다.

III. 검토

심판소는 Thaler가 인간 행위자의 창의적 기여 없이 인공지능에 의해 자체적으로 제작되었다고 표현한 것을 쟁점으로 받아들인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청은 등록 자료에 명시된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인간 정신의 창조적 힘에 의해 만들어진” “지적 노동의 결실”만을 보호할 뿐이다. (COMPENDIUM (THIRD) § 306 (상표 판례, 100 U.S. 82, 94 (1879); COMPENDIUM (THIRD) § 313.2 (저작권법이 “저작물은 반드시 사람에 의해 창작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청은 이에 따라 “인간의 창의적인 노력이나 개입 없이” “기계 또는 단순한 기계적 과정에 의해 생산된” 저작물을 등록하지 않는다) 따라서 Thaler는 이 저작물이 인간에 의한 창작물이라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저작권청을 한 세기 동안의 저작권 법리에서 벗어나도록 설득해야 한다. 그는 둘 다 하지 않았다.

Thaler는 해당 저작물이 인간 저작자의 기여로 창작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으므로, 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저작권청의 인간에 의한 창작물일 것에 대한 요건은 위헌이며 판례법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지의 여부만이 심판소가 판단해야 하는 쟁점이다. 현재 “저작권청은 인간이 저작물을 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저작권 등록 청구를 거부한다”. 그 기준에 따르면, 해당 저작물은 저작물로 등록될 수 없다. 법률 문구, 판례 및 오랜 저작권청의 관행을 검토한 후, 심판소는 다시 한번 ‘인간에 의한 창작물’ 요건이 미국 내 저작권 보호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저작물을 등록할 수 없다고 결론내린다.

저작권법은 유형 매체에 고정된 “창작적 저작물”을 보호한다.(17 U.S.C. § 102(a)). “창작적 저작물”이라는 표현은 “[1909] 저작권법에 의해 규정된 기준을 변경하지 않고 포함시키기 위해서” 의회에 의해 “의도적으로 정의되지 않았다.” 해당 용어는 “매우 폭이 넓지만” 그 범위는 무제한은 아니다. 의회는 이 언어를 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것보다 더 적은 수의 창작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저작권법은 “이 법안이 보호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미래의 의회가 보호해줄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대법원을 비롯한 저작권법을 해석하는 법원들은 일률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인간에 의한 창작물로 제한했다. 예를 들어, *Burrow-Giles Lithographic Co. v. Sarony* 사건에서 저작권 피고인은 당시 법령에 의해 특정 유형의 “저작자 또는 저작자들”의 저작물만을 보호하거나 “사진은 실제 물체 혹은 사람의 단순 복제”이기 때문에, “사진은 글이나 저작가의 생산물이 아니어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저작자는 “무엇이든 그 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원저작자, 제작자, 과학적 저작물이나 문학을 완성하는 사람”이라고 판시했고 사진은 “저작자의 독창적인 지적 컨셉을 대표한다”며 이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저작자”를 인간이라고 표현하였다(저작권을 “자신의 재능이나 지성의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로 설명), (영국 사법기관이 “저작자”를 “제작된 사진의 원인”이자 “저작물을 창작하거나 아이디어를 작품에 반영하는 “사람”으로 정의한 것을 “교훈적인” 결정으로 언급)

법원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전제 조건은 인간의 생각과 창조적 표현 사이의 연관성이라고 계속해서 밝혀왔다. *Mazer v. Stein* 사건에서 법원은 저작물이 “반드시 저작자의 아이디어의 유형적 표현인 원본”이어야 한다는 명제로 *Burrow-Giles* 사건을 인용했다.(347 U.S. 201, 214 (1954).) *Goldstein v. California* 사건에서 법원은 *Burrow-Giles* 사건을 다시 인용하며 ‘저작자’는 원본의 구성을 작성한 개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헌법적 의미에서는 ‘원저작자’ ‘원본을 소유하는 누군가’의 의미로 해석된다고 판결했다.(412 U.S. 546, 561 (1973).) 저작권청은 대법원 판례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인간에 의한 창작물을 저작권 보호의 필수적인 요소로 만든다.

대법원 판례 외에도 하급 법원들은 저작권 보호를 인간이 제작하지 않은 창작물로 확대하려는 시도를 거듭 기각했다. 예컨대 제9항소법원은 인간이 아닌 영적 존재가 쓴 단어가 담긴 책은 ‘게시에 인간의 선별과 배열’이 있어야만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Urantia Found. v. Kristen Maaherra, 114 F.3d 955, 957 - 59 (9th Cir. 1997); (저작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신성한 존재의 창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창의성의 일부 요소가 책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유사한 것으로 원숭이가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없는데,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아이들”, “홀어미”, “손주”, “홀아비”와 같은 동물을 제외한 모든 인류에 대하여 언급하기 때문이다. *Naruto v. Slater*, 888 F.3d 418, 426 (9th Cir. 2018); *Kelley v. Chicago Park Dist.*, 635 F.3d 290, 304 (7th Cir. 2011) 도 참조 (“저작권은 전적으로 인간의 노력”임에 반해 “정원의 형태와 외관은 대부분 자연의 힘에 기인한다”는 이유로 “살아있는 정원”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거절한다.); *Satava v. Lowry*, 323 F.3d

805, 813 (9th Cir. 2003) (자연에 의해 처음 표현된 소재는 인류의 공통 유산이며, 어떤 예술가도 저작권법을 사용하여 다른 이들이 그것들을 묘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때문에 해파리에 대한 묘사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원 판결은 저작권청의 부속서 지침에 반영되어 있으며, 인간에 의한 창작물 요건이 부족한 다음과 같은 예를 제공한다. “원숭이가 찍은 사진”, “성령을 저작자로 명명하는 노래”.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미국 법원의 판결은 없지만, 법원은 인간에 의하지 않은 표현은 저작권에 의한 보호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연방 기관들은 법원의 결정을 따라왔다. 1970년대에 컴퓨팅 기술이 저작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으로 저작물의 새로운 기술 사용에 관한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New Technological Uses of Copyrighted Works (“CONTU”))가 설립되었다. CONTU는 “자동 시스템에 의한 기계적 복제가 적용되거나 개입된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CONTU는 이를 검토 후 “독창적인 창작물”을 판단하는 기존의 사법 구조가 ‘인간에 의한 창작물’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창작한 저작물의 보호에 충분하므로 “저작권법 개정은 필요없다”고 판단하였다. CONTU가 설명했듯이,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위한 저작물의 자격은 창작에 사용된 장치가 아니라, 작품이 제작될 때 최소한 인간의 창조적인 노력의 존재 여부에 달려 있다”(“현재 저작권청은 이 접근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언급).

CONTU 보고서는 저작권청의 견해를 반영한다. 1976년 저작권법이 통과되기 10년 전, 저작권 등록부의 연례 보고서는 언제 컴퓨터로 만들어진 표현적 저작물을 저작권 보호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고려했다. 등록부는 ‘인간에 의한 창작물’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중요한 질문은 “저작물”이 컴퓨터가 단지 보조 도구로 쓰인 인간에 의한 창작물 중 하나인지, 아니면 저작물에서 저작권의 전통적인 요소(문학, 예술, 음악적 표현 또는 구성의 선택, 편곡 등)가 실제로 사람이 아니라 기계에 의해 수행되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저작권청 실무 매뉴얼인 미국 저작권청 부속서는 오랫동안 ‘인간에 의한 창작물’을 저작권 등록 요건으로 의무화해 왔다. 1976년 저작권법이 제정된 후, 법률이 인간에 의한 창작물을 요구한다는 저작권청의 판단을 반영하여 부속서 제2판이 개정되었다(‘저작권’이라는 용어는 저작물이 저작권을 가지려면 그 기원이 사람에게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식물 또는 동물이 생산한 것과 같이 자연에 의해 단독으로 생산된 것에는 저작권이 없다.) 현행 부속서는 이러한 요구 사항을 유지하며 이러한 요구 사항이 인간에 의하지 않은 표현이 문제가 되는 다수의 상황에 적용된다는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다. 부속서는 인공지능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심판소는 저작권청의 정책과 관행이 ‘인간에 의한 창작물’을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규정한다고 결론짓는다.

저작권청의 입장은 AI가 불러온 지식재산권 문제를 다룬 미국 특허청(USPTO)의 최근 보고서에 의해 뒷받침된다. USPTO는 저작권법에 따라 “자연인의 개입 없이 AI 알고리즘이나 프로세

스에 의해 생산된 창작물이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구했다. USPTO는 “대부분의 의견이 현행법은 인간이 아닌 것을 저작자로 허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내용은 법으로 남아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리고 심판소는 이에 동의한다.

업무상 저작물이 ‘회사와 같은 인간이 아닌 것 혹은 법인 등’을 저작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저작권법상 저작자가 될 수 있다는 Thaler의 두 번째 주장도 마찬가지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첫째, 해당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규정된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다. 업무상 저작물은 (A) ‘직원’이 작성하거나 (B) 서면에 해당 저작물이 업무를 위한 것임을 명확하게 동의하는 1인 이상의 ‘당사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두 경우 모두 업무는 구속력 있는 법적 계약(근로 계약 또는 고용 계약)의 결과로 저작물이 만들어진다. “창작 기계”는 법적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다. 둘째로, ‘업무로 인한 창작’ 원칙은 저작물의 소유자를 판단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저작권법은 저작물이 ‘인간에 의한 창작물’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한다. 요약하자면, 해당 저작물은 ‘저작자의 창작물’도 아니고 ‘업무’로 만들어진 저작물도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다.

Thaler의 두 번째 요청의 상당 부분은 인공지능만으로 제작된 저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를 지지하는 정책적 주장에 해당한다. 그는 저작권청의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를 저해하는 판례나 다른 선례를 인용하지 않았다. 1976년 저작권법에 성문화된 내용이 ‘인간에 의한 창작물’을 요구하기 때문에 해당 저작물은 등록할 수 없다.

IV. 결론

미국 저작권청 재심심판소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청구 등록 거절을 확인한다. 연방법 37 C.F.R. § 202.5(g)에 의거하여, 이 결정은 본 사건에 대한 저작권청의 최종 처분이다.